대전광역시 보육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의안 번호 **481**

발의연월일: 2009. 5. 7.

발 의 자: 조신형·김인식의원 외 4인

1. 제안이유

현실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고, 영·유아 발달 지원과 종합적인 육아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- 가. 대전광역시 보육정책위원회의 구성에 대하여 명시함(안 제7조).
- 나. 대전광역시 보육정책위원회의 회의를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구체적 으로 명시함(안 제9조).
- 다. 대전광역시보육정보센터의 구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함(안 제11조).
- 라. 대전광역시보육정보센터의 운영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등의 심의를 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두도록 명시함(제12조).
- 마. 보육시설 등에 대한 비용의 보조를 구체적으로 명시함(안 제20조).
- 바. 용어 등을 현실에 맞게 정비함.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「영유아보육법」

나. 합 의 :

대전광역시 보육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대전광역시 보육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- 제1조중 "「영유아보육법」의 규정에 의하여"를 "「영유아보육법」에 따라"로 한다.
- 제2조중 "보호·양육"을 "보호·양육·교육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"제2항의 규정에 의한"을 "제2항에 따른"으로 한다.
- 제4조중 "안전 대피훈련을"을 "안전교육 및 대피훈련을"로 한다.
- 제5조제2항중 "제1항에 의한"을 "제1항에 따른"으로 한다.
- 제6조중 "「영유아보육법」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"를 "「영유아보육법」 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6조에 따라"로 한다.
- 제7조제1항중 "1인을 포함한 15인"을 "1명을 포함한 15명"으로, 같은 조제3항중 "1인"을 "1명"으로 하고, 같은 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 - ②담당국장은 당연직위원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.
 - 1. 보육전문가
 - 2. 보육시설의 장 대표
 - 3. 보육교사 대표
 - 4. 보호자 대표
 - 5. 대전광역시의회 의원
 - 6. 공익을 대표하는 시민단체

-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- 제9조(회의)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.
 - ②정기회는 매년 1회를 개최하고,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시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.
 - ③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일 7일전까지 회의의일시·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 - ④위촉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「대전광역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」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- ⑤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. 제10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 - ③시장이 센터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전광역시 및 센터 홈페이지 등에 20일 이상 공고를 하여야 한다.
- 제11조제2항 중 "「영유아보육법 시행령」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"을 "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따른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중 "「영유아보육법 시행령」 제15조제1항"을 "법 시행령 제15조제1항"으로 한다.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- 제12조(운영위원회) ①센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 위원회를 둔다.
 - 1. 센터의 운영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
 - 2. 센터의 업무추진에 관한 사항
 - 3. 그 밖에 센터의 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
 - ②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하고, 센터의 장과 보육시설연합회장은 당연직위원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센터의 장이 위촉한다.

- 1. 관계 공무원
- 2. 보육시설장 대표
- 3. 보육교사 대표
- 4. 학부모 대표
- 5. 보육과 관련하여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
- ③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
- ④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⑤ 운영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참여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한다.
- ⑥운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센터의 장이 따로 정한다.
- 제14조는 다음과 같이 한다.
- 제14조(취약보육시설의 지정) ①시장 및 구청장은 보육시설 중에서 취약 보육시설을 지정하고 보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프로그램의 개발·보급 등 지원을 하여야 한다.
 - ②보육시설 취약지역에 취약보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는 수요조사 실시 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.
- 제16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 - ③시장이 센터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전광역시 및 센터 홈페이지 등에 20일 이상 공고를 하여야 한다.
-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- 제20조(비용의 보조) ①시장은 법 제36조 및 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에 따라 보육시설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.
 - 1. 보육시설의 설치·운영비

- 2. 영아·장애아보육 등 취약보육시설에 관한 비용
- 3. 센터의 설치·운영비
- 4. 지원센터의 설치·운영비
- 5. 법 제28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해당하는 자녀에 대한 입소료 및 현장학습비
- 6. 보육교사의 인건비 및 수당
- 7. 보육시설종사자의 보수교육 등 교육훈련 비용
- 8. 보육영유아의 급·간식비
- 9. 교재·교구 및 프로그램 개발비용
- 10. 출산휴가·보수교육 등의 대체 인력비
- 11. 그 밖에 시장이 영유아보육 및 취약보육시설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
- ②시장은 국·공립·법인·민간·직장보육시설, 가정보육시설 및 부모협동시설이 법 제30조에 따른 평가인증 결과 우수한 시설로 평가 받은 경우 보육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특별 지원할 수 있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 대비표

현	행		정	
의 규정에 의하여 보육 서비스 질을 의 경제적·사회적	례는 「영유아보육법」 대전광역시 영유아의 · 향상시키고, 보호자 활동을 원활하게 지 복지증진에 기여함을			「영유아보육법」
이라 한다)은 보호 를 건전하게 <u>보호</u> ② (생 략) ③시장은 <u>제2항의</u> 수립할 때에는 시	광역시장(이하 "시장" 조자와 더불어 영유아 양육하여야 한다. <u>규정에 의한</u> 계획을 민 등을 대상으로 보 시하고, 공청회를 개	 ② (현행과 같	<u>보호·양</u> - 날음)	은
은 영유아가 쾌적	정비) 보육시설의 장 한 환경에서 성장하도 를 정비하고, <u>안전 대</u> 야 한다.			 안전교육
에는 시장·구청장	요청) ① (생 략) L호 요청이 있는 경우 은 영유아의 인권과 보호조치하여야 한다.	,	•	① (현행과 같음)
<u>규정에 의하여</u> 대	아보육법」 제6조의 전광역시에 대전광역 (이하 "위원회"라 한			보육법」 (이하 에 따라
, ,	회는 위원장 및 부위 <u>함한 15인</u> 이내의 위	, ,		 - 15명

②시장은 위원을 위촉할 경우 관련 단 체 및 구청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위 촉할 수 있다.

③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, 위원회에 간사 <u>1인</u>을 두되 보육업무 담당과장이 된다.

제9조(회의) <u>①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시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</u>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.

②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일 7일전까지 회의의 일시·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③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.

제10조(설치 및 운영) (생 략) ①~② (생 략)

③ 〈신 설〉

②담당국장은 당연직위원이 되고 위촉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.

- 1. 보육전문가
- 2. 보육시설의 장 대표
- 3. 보육교사 대표
- 4. 보호자 대표
- 5. 대전광역시의회 의원
- 6. 공익을 대표하는 시민단체

(3)	
	1명

제9조(회의) <u>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</u> 임시회로 구분한다.

②정기회는 매년 1회를 개최하고, 임시 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시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 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 장이 소집한다.

③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일 7일전까지 회의의 일시·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④ 위촉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「대전광역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」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⑤<u>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</u> 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.

제10조(설치 및 운영) (현행과 같음)

- ①~② (현행과 같음)
- ③시장이 센터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 우에는 대전광역시 및 센터 홈페이지 등에 20일 이상 공고를 하여야 한다.

제11조(구성) ① (생 략)

②센터의 장은 「<u>영유아보육법 시행</u> 령」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 을 가진 자 중에서 공개채용을 통하여 시장이 임면한다.

③ (생략)

④보육전문요원은 <u>「영유아보육법 시행</u> 링」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면한다 ⑤~⑥ (생 략)

제12조(자문위원회) ①센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<u>자문하기 위하여 자문위원회</u>를 둔다.

1~3 (생략)

②자문위원회는 센터의 장이 위촉하는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 이 경우 센터의 장과 보육시설연합회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, 보육시설의 장, 보육교사, 보호자 각 1인 이상을 포함시킬 수 있다.

③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 〈신설〉

〈신설〉

〈신설〉

제11조(구성) ① (현행과 같음)
② <u>법 시행령 제14조제1</u>
항에 따른
③ (현행과 같음)
④ <u>법 시행령 제15조제1항</u>
<u> </u>
⑤~⑥ (현행과 같음)
제12조(운영위원회) ①
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
1 - 2 (처체고 가 이)
1~3 (현행과 같음)
②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
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위
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하고, 센터의 장
과 보육시설연합회장은 당연직위원이
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
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센터의 장
이 위촉한다.
1. 관계 공무원
2. 보육시설장 대표
3. 보육교사 대표
<u>4. 학부모 대표</u>
5. 보육과 관련하여 학식과 덕망이 있
는 사람
〈삭 제〉
③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
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
④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
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
찬성으로 의결한다.
⑤ 운영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참여한
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

당과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한다.

④자문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센터의 장이 따로 정한다.

제14조(취약보육시설의 지정) <u>시장 및 구청장은 국·공립, 법인, 민간, 가정, 부모협동, 장애인전담 보육시설 중에서 취약보육시설을 지정하고 보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프로그램의 개</u>발·보급 등 지원을 하여야 한다.

〈신설〉

제16조(설치 및 운영) ①~② (생 략)

〈신설〉

제20조(비용의 보조) ①시장은 <u>「영유아</u>
보육법」 제36조 및 「영유아보육법 시
행령」 제24조의 규정 등에 따라 보육
시설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한
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<u>범위</u>
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.

1~4 (생 략)

〈신설〉

- 5. 보육교사의 인건비 및 수당
- 6. 보육시설종사자의 보수교육 등 교육 훈련 비용
- 7. 보육영유아의 급·간식비
- 8. 교재·교구 및 프로그램 개발비용
- 9. 저소득층 영유아에 대한 건강검진

 비용

〈신설〉

⑥운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센터의 장이 따로 정한다.

제14조(취약보육시설의 지정) ①시장 및 구청장은 보육시설 중에서 취약보육시 설을 지정하고 보육이 원활하게 이루 어질 수 있도록 프로그램의 개발·보급 등 지원을 하여야 한다.

②보육시설 취약지역에 취약보육시설 을 설치하고자 할 때는 수요조사 실시 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.

- 제16조(설치 및 운영) ①~② (현행과 같음)
 - ② (현행과 같음)
 - ③시장이 센터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 우에는 대전광역시 및 센터 홈페이지 등에 20일 이상 공고를 하여야 한다.

제	203	조(비	용의	보조	(1)	<u>법</u>	제3	6조	및
	법	시행	령	제24조	스제1학	항에 대	<u> </u>		
								<u>범위</u>	에

<u>서-----</u>

- 1~4 (현행과 같음)
- 5. 법 제28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해당하는 자녀에 대한 입소료 및 현장 학습비
- 6. 보육교사의 인건비 및 수당
- 7. 보육시설종사자의 보수교육 등 교육 훈련 비용
- 8. 보육영유아의 <u>급·간식비</u>
- 9. 교재·교구 및 프로그램 개발비용
- 10. 〈삭제〉
- 11. 출산휴가·보수교육 등의 대체 인

10. 그 밖에 시장이 영유아보육 및 취약보육시설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

②시장은 국·공립·법인·민간·직장보육시설, 가정보육시설 및 부모협동시설이 「영유아보육법」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인증 결과 우수한 시설로 평가받은 경우 보육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특별 지원할 수 있다.

<u>력비</u>
12. 그 밖에 시장이 영유아보육 및 취
약보육시설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
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
<u>o</u>
②
법 제30조에 따른
범위에서

관 련 법 령

□ 영유아보육법

제1조 (목적) 이 법은 영유아(영유아)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·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 도록 함으로써 가정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4조 (책임) ① 모든 국민은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진다.

-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진다.
- ③ 시장·군수·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은 영유아의 보육을 위한 적절한 보육시설을 확보하여야 한다.
- 제6조 (보육정책위원회) ① 보육에 관한 각종 정책·사업·보육지도 및 시설평가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가족부에 중앙보육정책위원회를, 특별시·광역시·도·특별 자치도(이하 "시·도"라 한다) 및 시·군·구(자치구를 말한다. 이하 같다)에 지방보육정책위원회를 둔다. 다만, 지방보육정책위원회는 그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의 위원이 제2항에 따른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시·도 또는시·군·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.
 - ② 제1항에 따른 중앙보육정책위원회와 지방보육정책위원회(이하 "보육정책위원회"라한다)의 위원은 보육전문가, 보육시설의 장 및 보육교사 대표, 보호자 대표 또는 공익을 대표하는 자, 관계 공무원 등으로 구성한다.
 - ③ 보육정책위원회의 구성·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28조 (보육의 우선 제공)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, 사회복지법인, 그 밖의 비영리법 인이 설치한 보육시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육시설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우선적으로 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 다만, 「고용정책기본법」 제21조제2항에 따라 고용촉진시설의 설치·운영을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이 설치·운영하는 시설의 장은 근로자의 자녀가 우선적으로 보육시설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. <개정 2007.10.17, 2008.2.29>
 - 1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
 - 2.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자녀
 - 3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4조에 따른 차상위계층의 자녀
 - 4. 「장애인복지법」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장애등 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자녀
 - 5. 그 밖에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의 자녀

제36조 (비용의 보조 등)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0조에 따른 보육시설의 설치, 보육교사(대체교사를 포함한다)의 인건비, 초과보육(초과 보육)에 드는 비용 등 운영 경비 또는 보육정보센터의 설치·운영, 보육시설종사자의 복지 증진, 취약보육의 실시 등 보육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.

□ 영유아보육법 시행령

- 제14조 (보육정보센터의 장의 자격 및 직무) ①각 보육정보센터의 장은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육전문요원의 자격을 취득한 이후 보육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 한다.
 - ②각 보육정보센터의 장은 당해 보육정보센터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통할한다.
 - ③각 보육정보센터의 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한다.
- **제15조 (보육전문요원의 자격 및 직무)** ①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육전문요원 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 한다.
 - 1.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보육교사 1급 자격을 가진 자
 - 2. 「사회복지사업법」에 의한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취득한 이후 보육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
 - ②보육전문요원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보육정보센터의 업무를 수행하고, 보육정보센터의 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선임 보육전문요원이 보육정보센터의 장의 직무를 대행한다.
- 제24조 (비용의 보조) ①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. <개정 2005.6.23, 2008.2.29>
 - 1. 보육시설의 설치, 증ㆍ개축 및 개ㆍ보수비
 - 2. 보육교사 인건비
 - 3. 교재·교구비
 - 4. 보육정보센터의 설치·운영비
 - 5. 보수교육 등 종사자 교육훈련 비용
 - 6. 장애아보육 등 취약보육 실시비용
 - 7. 그 밖에 차량운영비 등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육 시설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
 - ②제1항에서 정한 비용의 지원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다.

대전광역시 보육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성 의 원 서 명

의 원 명	서 명	비 고
是 是 是 是 是 是 是 是 是 是 是 是 是 是 是 是 是 是 是	Just	
7 29	an	
과 영교	24082	
0 \$ % 2	OBEN.	
2 5% M	30	
各州各	Emb-	